

투자자문계약서

_____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스카이워크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대해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투자자문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자자문의 대상)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자문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파생상품
3.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투자자문 대상자산으로서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등

제 2 조의2 (적합성 원칙)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적합성원칙)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투자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마.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바.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 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4, 5, 6, 7>과 같다.

제 2 조의3 (적정성 원칙)

①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적정성원칙)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적정성원칙) 제2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마.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바.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서면 교부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조의4 (설명의무)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2. 투자에 따른 위험
3. 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 제2항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시행령 제13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가.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 나. 계약의 해지 · 해제
 - 다. 증권의 환매(還買) 및 매매
 - 라. 금융소비자의 환매(還買)나 매매가 용이한지에 관한 사항
 - 마. 외국화폐로 투자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성 바. 그 밖에 원금 손실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

제 3 조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자문
2.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자문
3.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한 종류, 종목, 수량, 가격, 매매방법, 매매시기 등 종합적인 투자판단 등의 자문
4. 국내외 경제동향, 산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및 이와 관련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투자전략과 관련한 고객의 요청 자료 제공
6. 상기 업무에 관련된 부수 업무

제 4 조 (계약의 유효기간)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년 이상의 기간으로 고객과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5 조 (투자자문 제공방법)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을 사전에 전자방식(전용어플리케이션 등), 유선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재산의 내용이나 규모 및 투자방침에 부합된 투자자문 서비스를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한 전자방식,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

합하도록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회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고객이 제3항에 따른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제4항에 따른 회신도 없는 경우,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투자자문수수료)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문수수료를 납부한다.

1.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1>에서 정한 투자자문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를 회사에 지급한다.
2. 기본수수료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별지1>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를 적용하여 연1회 선취로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3. 성과수수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종도해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4. 회사는 고객의 종도해지 시 <별지1>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사의 신의성실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투자자문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자문담당자를 선임한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문인력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문인력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인력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은 제4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문인력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자문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9 조 (비밀유지의무)

-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문재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 내용 및 그 밖에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통지의무)

- ① 고객은 이메일과 연락처 등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생길 경우 자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2>에 기재된 고객의 연락처에 전자문서 또는 유선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장장을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장장을 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1 조 (투자자문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자문재산을 자문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2 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

회사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한다.

제 13 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②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③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④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⑤ 투자자문을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제 14 조의2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금융소비자의 계약의 변경·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5. 회사 또는 그 임원·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금융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물품 또는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6.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재산상 이익의 제공, 다른 금융상품으로 대체 권유, 또는 해지 시 불이익에 대한 과장된 설명을 하는 행위
7. 금융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8.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돌려받으려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

제 14 조의3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회사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5.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6.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7.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제2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9.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0.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금융소비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1. 회사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12. 금융소비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

- 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3. 금융소비자(이하 "신용카드 회원"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1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제 15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자문재산의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회사의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 ③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계약서류를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고객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계약과 관련한 대가에 대하여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고객과 합의하여 반환금액을 정한다.

제 16 조(청약의 철회)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자문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2>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7 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의2(투자광고)

- ① 회사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0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투자광고 포함사항, 표시 금지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하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3. 투자에 따른 위험
 - 가.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 나. 원금 손실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4. 과거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6.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7.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보호 내용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9.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이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회사가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손실보전(損失補填)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해당 투자성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3.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으로 정하는 행위

제 18 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1 조 (관계법규등 준용)

-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계약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 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기명날인을 위한 여백]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고객) 상호:
주소:
대표이사:

(인)

(회사) 상호: (주)스카이워크자산운용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One IFC 2 8 층
대표이사: 황 이석 (인)

<별지 1>

투자자문 세부계약조건

1.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
2. 투자자문재산 금액: 원 (단, 계약금액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 가능)
3. 투자자문수수료
 - 기본수수료:
 - 성과수수료:
 - 기본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는 부가가치세 10% 별도 부과한다.
※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4. 자문수수료 지급시기 및 입금계좌:
 - 기본수수료는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성과수수료는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 수수료 입금계좌:
5. 투자자문담당자:
6. 고객에 대한 통지 장소 (우편 또는 E-mail 중 선택 가능)
 - 주 소 :
 - 전 화 :
 - 팩 스 :
 - E-Mail :
7. 기타사항
 - 연체수수료 및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별지 2>

수수료 부과기준표

회사의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부과되는 전체 수수료 체계는 아래와 같다.(성과보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고객과 합의에 따라 부과한다.)

구분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지급 구분
투자자문 계약	기본수수료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성과보수		만기 또는 해지시 7영업일 이내지급

- ① 성과보수의 지급: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성과수수료가 지급되며 그 한도는 투자수익의 []%를 적용한다.
- ② 높은 투자위험 노출: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 ③ 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성과보수는 고객과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성과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계약기간중 계약자산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중도해지시에는 기준수익률을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